



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
IOM이민정책연구원
교류협정서



IOM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양 기관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이주, 체류관리, 사회통합, 국경관리와 관련된 연구, 교육, 학술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서 국내 체류 외국인과 해외 체류 재외동포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국가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

양 기관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1. 연구자의 교류 및 협력 (방문연구)
2. 공동 연구 및 공동 관심사 발굴 및 정보 교환
3. 공동학술행사 개최 및 참여
4. 협력 관련 자료의 공유
5. 기타 양 기관이 본 교류협력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제3조(기밀유지)

양 기관은 협약 이행 중에 취득한 정보와 기술에 대하여 비밀 유지 및 외부 유출 방지에 노력해야 하며, 대외 공개를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

제4조(일반사항)

- ① 공동 수행 사업을 처리할 시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역량과 역할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상대방의 지위와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한다.
- ② 양 기관은 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무 담당자 간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의하며 양 기관의 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
제5조(협약의 해석)

본 협약서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거나 이행 중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.

제6조(효력발생, 상실 및 협약기간)

-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-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③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합의가 있거나 일방의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3월(90일)이 경과한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,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기관장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5월 26일

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
김석호



IOM이민정책연구원 원장
정기선

